
 국토교통부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5. 21(목) 총 8매(본문3, 참고5)	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당 자	• 과장 이창기, 기술서기관 조태영, 주무관 최철민 • ☎ (044) 201-3850, 3853, 3854
보 도 일 시		2020년 5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21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전기이륜차·어린이통학버스 안전성을 높ی겠습니다

### 전기이륜차 안전기준 강화·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설치 범위 개선

- \* 서울시가 배달용 이륜차 1,050대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여 치킨·피자 등의 배달 서비스에 활용하는 등 전기 이륜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.
- \* 미취학 어린이를 둔 이OO(35세, 여성)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아이를 태울 때 기존 좌석안전띠 착용이 곤란한 경우를 경험하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좌석안전띠 및 좌석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이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유관기관에 제안.

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 전기장치\*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.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.

\* 엔진시동, 주행에 필요한 전력변환장치(인버터), 구동전동기(모터), 연료전지 등의 작동 전압이 높은 전기장치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(국토교통부령)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 입법예고 한다.

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,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.
-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.
-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좌석 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킨다.
- 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 (빨등 등)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,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 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
- 또한, 화물자동차의 가변축 작동과 관련하여 기존 규정에 혼용되어 있어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자동작동조건과 수동조작장치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, 가변축 수동조작을 위한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화물차의 가변축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.
- 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개선된다. 자동차의 후방 영상장치 장착 시험 시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을 완화하고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경고음 형식,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도 신설된다
- 그 외에도,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.

-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“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“비상탈출구, 보행자다리모형 등에 대해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하고,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 자동차기술과 조태영 서기관(☎ 044-201-3850), 최철민 주무관(☎ 044-201-385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고 1

##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 안전성 기준 도입

### □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기준 신설

- (고전원전기장치) 전기자동차는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개방, 분해, 제거 되지 않는 구조이며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
  - \* 작동전압이 직류: 60~1500볼트, 교류: 30~1000볼트 이하의 모든 전기장치
- (구동축전지)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이며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출 것을 규정
  - \* 자동차의 구종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저장매체

### 《이륜자동차 고전원전기 안전성 주요 사례》

<p>고전원전기 장치 (접촉 안전성)</p>	 <p>IPXXD: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철사모형</p>
<p>고전원전기 장치 (절연안전성)</p>	
<p>구동축전지</p>	 <p>&lt;기계적 충격 및 압착, 과충전, 과방전, 과열방지, 과전류, 단락, 열충격, 연소, 진동, 과열방지, 침수시험&gt;</p>

## 참고 2

##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 기준 개정

- (좌석안전띠 높이조절)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

### 《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 설치 사례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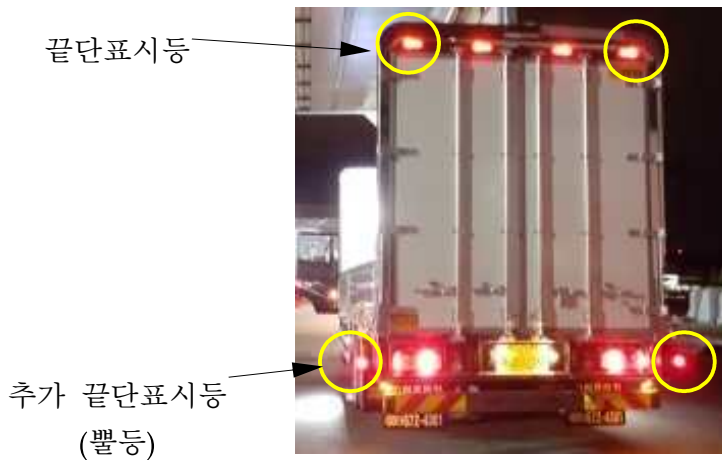


### 참고 3

### 끝단표시등(빨등 또는 토끼등) 설치 기준 정비

- (빨등, 토끼등) 끝단표시등의 한 종류로 대형화물자동차의 후미 양 끝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,
  - 운전자가 야간에 후진 또는 차선변경 시 자동차의 후미 양 끝단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안전사고 및 대형교통사고 방지

#### 《 추가 끝단표시등(빨등) 설치 사례 》



끝단표시등 추가 설치 사례



등광색 정상 설치  
(앞쪽: 흰색, 뒤쪽: 빨간색)  
끝단표시등(빨등) 설치 형태

## 참고 4

## 가변축 개요

- (가변축) 대형화물차에 주로 설치 및 사용되는 차축의 한 종류로서 일반 고정차축과는 다르게 상·하 승강조작이 가능한 차축으로,
  - 공차 주행시 가변축을 지면으로부터 이격함으로, 도로파손 방지, 유류비 절약 및 타이어 마모방지 등 차량운행비용 절감

### 《 가변축 설치 사례 》



볼보 트럭



스카니아 트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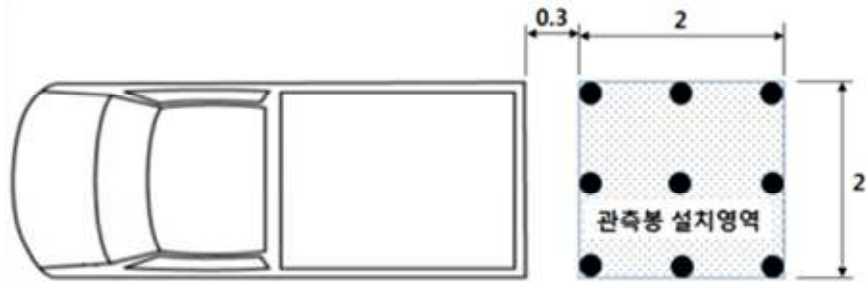
**참고 5**

**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기준 명확화**

□ (후방보행자 안전장치\*) 후방영상장치 및 접근경고음발생장치 설치기준 마련

\* 후방보행자 안전장치: 자동차 후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또는 운전자에게 경고음이나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로 후방영상장치, 접근경고음 발생장치,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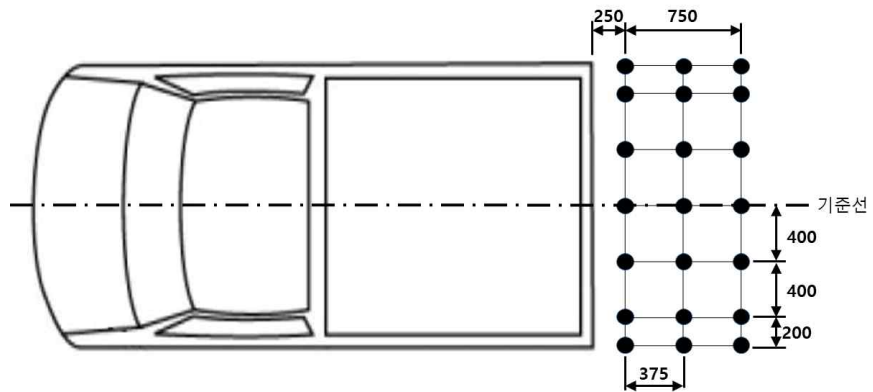
후방영상  
장치  
(설치기준)



● : 관측봉 (단위 : 미터)

《 관측봉 설치 사례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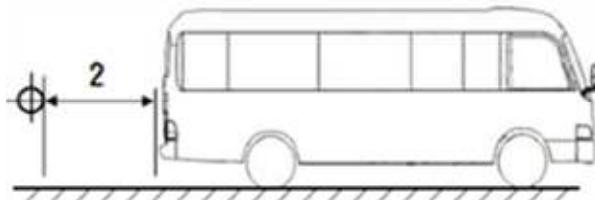
접근경고음  
발생장치  
(설치기준)



● : 보행자모형 (단위 : 밀리미터)

《 보행자 감지영역 및 보행자모형 설치 위치 사례(폭 2m 자동차) 》

후진경고음  
발생장치



⊕ : 마이크로폰 (단위 : 미터)

《 마이크로폰 설치 사례 》